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복리후생비 규정

부산광역시영도구체육회 복리후생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년	12월	6일
개정	2022년	2월	22일
개정	2024년	2월	16일
개정	2025년	2월	13일
개정	2025년	7월	22일
개정	2026년	2월	1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 및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을 제외한 보조금(예산) 및 자체예산에서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① 2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진결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③ 직원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회가 전액 부담한다.

제3조(체육행사) ① 직원의 체력과 건강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운동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체육의 날’ 및 ‘체력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체육의 날 및 체력주간의 행사는 연간 2~4회 실시하며, 실시금액은 구보조금(운영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제4조(피복비) 직원에 대하여 지도활동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활동복으로 하계 200,000원, 동계 400,000원 피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2.16.>

제5조(급량비)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급량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2.18.,개정 2025.2.13>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6조(교통비)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편

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2.18.,개정 2025.2.13>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7조(체력단련비) ① 직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150,000원 정액 지급한다.

<개정 2024.02.16.>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신설 2022.02.18.>

제8조(하계휴가비) ① 직원에게는 매년 7월 급여일에 하계휴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5.2.13>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③ 직원 휴가비는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년 기본급 인상 시 연동하여 지급한다.

[표-1]

직 급	지급년 (발령일 기준)	산출내역
사무국장		정액 700,000원
지도자	1년이내	기본급의 10%
	2년~3년	기본급의 13%
	4년~5년	기본급의 16%
	6년~7년	기본급의 19%
	8년~9년	기본급의 21%
	10년~11년	기본급의 24%
	12년~13년	기본급의 27%
	14년~15년이상	기본급의 30%

<표개정 2024.02.16.>

제9조(명절휴가비) ① 직원에게는 매년 설날 및 추석에 명절휴가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2.13>

[표-2]

직 급	지급년 (발령일 기준)	산출내역
사무국장		정액 700,000원
지도자	1년이내	기본급의 10%
	2년~3년	기본급의 13%
	4년~5년	기본급의 16%
	6년~7년	기본급의 19%
	8년~9년	기본급의 21%
	10년~11년	기본급의 24%
	12년~13년	기본급의 27%
	14년~15년이상	기본급의 30%

<표개정 2024.02.16.>

제10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특명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게는 예산(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②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단, 지도자의 휴일근무가 요청되는 경우 대체 휴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장기근속수당) ① 장기근속수당은 체육회 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근속년수에 가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근속년수 3년 초과 직원부터 1년당 1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상한선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제12조(관리업무보조수당) ① 직원 중 직급을 발령받은 자는 관리업무수당을 매월 급여일에 정액 지급한다.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표-3]

직 급	사무국장	행정지도자
행정업무수당	400,000원	200,000원

<표개정 2024.02.16.>

제12조2(직급 및 직책수당) ① 사무국장에게 매월 급여일에 직급수당 1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을 지급한다.

② 지도자 중 팀장(근속년수 10년 이상의 행정업무가 가능한 직원 1명)에게 매월 급여일에 100,000원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③ 근속년수 10년 이상이며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도자에게는 매월 급여일에 50,000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한다.

④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조 신설 2024.02.16.]

제13조(연차수당) ①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3조(수당의 지급)에 의한 소정의 연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월차 수당(연가보상비)을 지급한다. 단,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퇴직직원에 대하여도 이미 발생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

1. 연차수당 : 통상임금×1/209시간×8시간×일수

제14조(여비) ① 직원의 업무출장, 교육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13>

② 업무상 직원의 개인차량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 3만원이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제외한다.

③ 공무에 다른 근무지 외 출장 여비는 표-4 국내여비 정액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표-4]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25,000원
직원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원

<표개정 2024.02.16.>

제15조(활동비) ① 직원(사무국장 자체예산, 지도자 사업비에서 지출)에게는 매 월 급여일에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편성과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5.2.13>

②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직급	근무년수	산출내역
사무국장		정액 200,000원
지도자	0년1월~3년	30,000원
	3년1월~6년	60,000원
	6년1월~9년	90,000원
	9년1월~12년	120,000원
	12년1월~	150,000원

제16조(정근수당) ① 직원에게는 예산(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 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직급	지급년 (발령일기준)	산출내역
직원	2년 미만	기본급의 5%
	3년 미만	기본급의 10%
	4년 미만	기본급의 15%
	5년 미만	기본급의 20%
	6년 미만	기본급의 25%
	7년 미만	기본급의 30%
	8년 미만	기본급의 35%
	9년 미만	기본급의 40%
	10년 미만	기본급의 45%
	10년 이상	기본급의 50%

[조 신설 2026.02.12.]

부 칙(202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예산(보조금) 부족시 자체예산(이사회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예산(보조금) 부족시 자체예산(이사회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4.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예산(보조금) 부족시 자체예산(이사회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예산(보조금) 부족시 자체예산(이사회비)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5.7.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예산(보조금) 부족시 자체예산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할 수 있다.